보건복지부	보 도 설 명 자 료		
배 포 일	2021. 3. 29. / (총4매)	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과 장	박 은 정	전 화	044-202-3380
담 당 자	정 동 민		044-202-3447

◈ 즉각분리제도는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한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보호시설 부족에 대비해 쉼터 및 보호가정 확충, 지자체 비상대비체계 운영 등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을 방지하며, 피해아동 보호 예산 확충('21(437억), '20(297억))

(3월 29일자 경향신문, "분리해도 지낼 곳 없는데… 내일부터 '학대 아동 즉각 분리'" 보도 관련)

□ 보도내용

○ **연2회 신고 분리 기준은 기계적이고, 보호시설 외 학교 등에서 보호자 접근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

○ 아동학대발생 건수에 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부족**

○ **아동학대 대응 재원**의 대부분이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마련되고 있어 **예산 규모 불안정**

□ 설명내용

① 즉각분리제도 요건 관련

○ **아동학대 2회 이상 신고된 사례**라고 하여 무조건 분리하고, **최초 신고사례**에 대해서 원가정보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 아동학대 의심사례신고로 현장 조사 중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의심)자와 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학대 발생 우려가 강한** 경우 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즉각분리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일시보호조치)는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72시간) 후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가능. 또한, 임시조치(검사)를 법원에 청구 가능하나, 임시조치 미청구 또는 법원의 미결정시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됨(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15조 참조)

-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피해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고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도입한 것임

○ 보호시설 외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행위(의심)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분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제19조),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

* 아동학대 대응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함께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음

<즉각분리제도 개요 >

① 제도 개요

-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 그간 재학대 위험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
-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분리 후 보호 절차

- 즉각분리 필요 시 **아동 의사** 확인(동의서 작성) → 쉼터 등 **보호시설 이동** → **7일 이내** 추가 **조사·건강검진·심리검사**로 **학대여부 판단**

→ (①**장기 보호조치 필요 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상황 정기 점검**→ 가정복귀 가능 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행**으로 안전 확보(2~3개월) 후 **복귀**

→ (②**장기 보호조치 불필요 시**) **상담, 가정 점검 후 가정 복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② 분리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시설 부족 관련

○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금년 29개 추가 개소하여 105개까지 확충**하고, **2세 이하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통해 **200여개 가정이 전문적인 가정보호**를 제공 추진

○ 또한,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되, 쉼터 등이 확충될 때까지 시도에서 일시보호여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시·도별 전담부서 지정** 등 **비상대비체계 구축·운영 중**('21.2월~)이며, 관내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 시·군·구에서 보호가 어려울 경우 **여유 정원이 있는 최인접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 예정**

*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 시도 점검회의(1차(2.9), 2차(3.12))를 개최하였고 3차(4월말) 예정

③ 아동학대 예산 관련

○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 및 쉼터 29개** 신규 설치, **지자체 상담시설** 설치 지원 등 **'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재원(국비)은 437억원**으로 **'20년(297억) 대비 140억원이 증가**(1.48배)하였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 **관련 법령(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